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안 번호	1599
----------	------

제출연월일: 2017년 2월 6일

제출자: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각급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 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과 체험학습 공간 제공으로 에너지와 환경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2. 관련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제26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7-3호」 (2017. 1. 3.)
 -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공고

3. 사업개요

- 가. 추진방식 : 협동조합형
- 나. 시설형태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
- 다. 건물현황 및 시행자

순	학교명	건물명	건축연도 (건물연령)	건물 등급	옥상면적 (㎡)	시행자
1	상계고	본관동	1987 (29년)	B	1,914	노원햇빛과바람발전 협동조합

라. 사업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건물명	설치면적 (㎡)	발전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건설비	연간 사용료
상계고	본관동	426.8	70.2	81,993	117,000	2,106

마. 사용·수익허가 조건

- 사용료 : 금2,106천원(30,000원×70.2kW=2,106,000원)
- 허가기간은 10년(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
- 사용 종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단, 사업기간 내 매각이나 대수선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영구시설물 즉시 철거 및 시설물 철거비용 예치 조건
※ 사업종료 시 계속 사용이 철거보다 교육 및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 철거비용 예치 없이 기부채납 예정

바. 건물 구조검토, 설계, 건설, 학생안전시설 등 소요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사. 시설물에 대한 대물·대인 보험가입은 시행자 부담 예정

아. 하자보수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같음

4. 추진경과

- 2016. 5. 20. 햇빛발전소 설치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16. 5. 23. 햇빛발전소 설치 학부모 설문조사(85% 찬성)
- 2017. 1. 9. 햇빛발전소 설치 구조검토 완료(안전, 구조진단업체)
- 2017. 2. 2. 구조진단서 검토 완료(안전,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5. 기대효과

-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활용을 통한 에너지 및 환경 교육 효과 제고
- 「원전하나 줄이기」 및 「블랙아웃 방지」 일조
- 햇빛발전소 구조물의 여름철 그늘 효과로 건물의 온도 강하

6. 향후계획

- 사용허가 신청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업자 ↔ 학교)
- 전기사업자(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사업자→서울시)
- 공사 착공 및 준공(사업자)

붙임 1.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

2. 관련법령(발체) 1부. 끝.

【붙임1】

상계고등학교 햇빛발전소 배치도면, 현황사진



▲ 상계고등학교 햇빛발전소 배치도면(안)



▲ 상계고등학교 옥상 사진

※ 설치용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관 련 법 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이하 생략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이하 생략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감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⑦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 2017년 사용료(대부료) 공고 >

적용기간	사용료 및 대부료(단위: kW·년)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용량 100kW 초과 : 35,000원 ○ 설비용량 100kW 이하 : 30,000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9.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15. 소관재산중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폐지